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57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12월 18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기관의 사후 조치를 10일 이내에 모두 완료해야만 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바, 5분자유발언에 대한 ‘조치계획이나 회의결과 등’을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5분자유발언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37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7조제4항 중 “처리결과를”을 “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”로
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7조(5분자유발언) ①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37조(5분자유발언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<u>처리결과</u>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37조(5분자유발언) 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u>조치계획이나</u> <u>처리결과 등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5분자유발언) ① ~ ③ (생 력) <u><신 설></u>	제37조(5분자유발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